

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

- 국세청, 2021. 2

- (신청대상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(65세 이상: 우편, 65세 미만: 모바일)을 발송했습니다.
- (신청기간)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,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
 -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(5.1.~31.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신청방법) 장려금은 ARS전화, 손택스,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, 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① ARS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 - ② 손택스: 스마트폰에 '손택스 앱' 다운로드하여 신청
 - ③ 홈택스: 인터넷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 -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
- (전화상담)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(1566-3636)·세무서·국세상담센터(126)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-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·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. (붙임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참조)
 - 다만,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① (가구 구성)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배우자·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·홀벌이·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.

구 분	요 건
단독 가구	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 가구	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)
맞벌이 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② (소득 요건)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*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*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포함

구 분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기준금액	4만~2,000만 원 미만	4만~3,000만 원 미만	600만~3,600만 원 미만

- 다만,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,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(5.1.~31.)에 신청해야 합니다.

③ (재산 요건) 2019. 6. 1. 현재 부동산·전세금·자동차·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*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

2 지급액 및 정산

지 급 액

□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며,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 원입니다.

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15만 ~ 52.5만 원	15만 ~ 91만 원	15만 ~ 105만 원

*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('21. 9월) 지급

정 산

□ 금년 9월에 2020년 가구·소득·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·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

○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.



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① ARS(자동응답)전화: 1544-9944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-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- ② 따라 하기 쉽도록 「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」와 「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」를 구분하여 도식화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- ③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,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.

②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

③ 홈택스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-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간편신청하기)
- ②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: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일반신청하기)

④ 「신청도움서비스」 이용시간: 09시~18시, 점심시간(12시~13시) 제외

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ARS신청·손택스·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아래 전화번호로

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-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: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“장려금 일반상담” 선택

4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
 -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,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
 -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·소득·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사기(보이스 피싱)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
 - 국세청, 세무서,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 -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(☎112),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,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-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

● 가구 유형별 현황

(천 가구)

계	단독 가구	홀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995	692	274	29

● 연령대별 현황

(천 가구)

계	30세 미만	30대	40대	50대	60대	70세 이상
995	297	96	121	157	164	160



● 안내금액별 현황

(천 가구, 만 원)

계	15~30	30~45	45~60	60~75	75~90	90~105
995	337	249	303	27	28	51

* 가구당 평균 안내금액 : 42만 원

● 지방국세청별 현황

(천 가구)

계	서울	중부	부산	인천	대전	광주	대구
995	137	178	183	123	119	138	117

붙임 2 - 주요 문답 사례 (Q&A)

사례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*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- * '20년 선택 비율: ① ARS 53.2% ② 손택스 22.5% ③ 홈택스 14.5% ④ 신청도움서비스 9.8%
- ① ARS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② 손택스: 스마트폰에 '손택스 앱' 다운로드하여 신청
- ③ 홈택스: 인터넷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④ 신청도움서비스: 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①~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

사례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?

- 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「신청도움서비스」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.

사례 3

**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
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?**

-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,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.
-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.
 1.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
 2.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
 3.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

사례 4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?

- 손택스·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사례 5

**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
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**

- PC에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 한 후,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제출신청 →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→ 반기 근로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 (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)
-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(급여 통장 사본 등)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례 6

**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
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?**

- 아닙니다.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또한,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,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

사례 7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%만 지급하는 이유는?

-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는 것입니다.
- 또한,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,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·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,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.

사례 8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?

-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* 근로장려금을 지급(환급)하지 않습니다.
- *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

붙임 3 - 근로장려금 반기·정기 신청 비교

구 분	반기 신청	정기 신청
신청대상자	(상반기분) '20.1~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(하반기분) '20.7~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	'20년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신청 기간	(상반기분) '20. 9. 1. ~ 9. 15. (하반기분) '21. 3. 1. ~ 3. 15.	'21. 5. 1. ~ 5. 31.
지급 시기	(상반기분) '20.12월말 (하반기분) '21.06월말 * 정산 : '21.09월말	'21.9월말
지급 금액	'20년 상·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 지급 또는 지급유보 ¹⁾ '21.9월 정산 (추가 지급 또는 환수)	산정액의 100%
(사례)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	('20.12월말) 35만 원 지급 ('21.06월말) 35만 원 지급 ('21.09월말) 30만 원 지급	('21.9월말) 100만 원 지급
대상장려금	근로장려금 ²⁾	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- 1)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
- 2)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'21.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